

[별표 15]<개정 1982.12.30>

관광종사원연수기관시설기준(제39조관련)

종	별	기	준
강	의	실	46제곱미터이상으로 2개 교실이상
실	습	실	46제곱미터이상으로 1개 교실이상
영	사	실	실습실 기준에 준한다.
강	사	실	전임강사용 책상 및 걸상 4개이상
실	습	장	1. 실습생 50인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관광호텔 식당업용 기구
		비	일체
			2. 50명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실습복
			3. 영사기 1대
			4. 환등기 1대이상
			5. 카메라 2대이상
실	습	교	영사필름 및 환등기용 교재 1권이상(식당, 객실, 현관, 실무별)
화	장	실	수세식으로 남·여별 화장실 각각 1개이상
휴	게	실	학생 50명이상이 휴게할 수 있는 각종 오락기구 확보
실	습	용	2급이상의 관광호텔과 실습계약을 체결할 것.
호	텔	확	다만, 당해교육기관에 부속호텔이 있는 경우는 3급이상일 것.
		보	